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

-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- 80호 (2015.5.29)
 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"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"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개정 사항

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조정(안 제7조제7항, [별표1])
- 사용량-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8조제2항제4호)
- 저가의약품 정의 마련([별표1])에 따른 조문 정비(안 [별표3]~[별표6])
- 근거법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조문 배열 정비 등

붙임 : 개정고시문 (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www.kha.or.kr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운학 국장 류향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199 (2015.05.29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

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